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농림수산위원회

1995. 2. 22.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 일자 : 1995년 2월 14일
- 회부 일자 : 1995년 2월 14일

나. 상정 일자 : 제111회 임시회

- 제 1 차 농림수산위원회 (1995. 2. 21)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농정국장 손문주)

가. 제안 이유

-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국립공원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시설한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산림청에서 재정경제원과 협의 조정한 금액)와 유사한 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시설사용료의 상향 조정 (별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 병 생)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내의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국립공원 및 국유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와 형평을 맞추고, 휴양림과 각종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차료 및 각종 시설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강의실, 단체숙소, 샤워장의 사용료를 새로이 징수코자 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자연휴양림과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검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별첨

- 충청북도자연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